삼립

공정거래 정책

1. 목적

삼립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공정거래 정책은(이하 "이 정책")은 주식회사 삼립(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를 갖추어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적용 범위

이 정책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이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3. 정책의 내용

1)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제반 공정거래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의 시행령 및 규칙 등 하위 법령(이하 "공정거래법규") 및 관련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경쟁업체와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리딩기업으로서의 공정경쟁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합니다.

3)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협력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공정성, 충실성을 확보하고 공정거래법규 위반을 사전 예방, 사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진실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합니다.

4)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 위반행위를 구성원 스스로가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 내부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합니다.

5) 임직원은 공정거래법규나 관련 사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지시, 승인, 방조 등을 철저히 금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규 관련 사내 규정 등 관련 위반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위반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또는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속하게 자율준수관리자, 컴플라이언스 부서 또는 법무 또는 감사 담당부서에 보고하기로 합니다.

6)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준법 여부를 감독하고, 공정거래법규 및 관련 사내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7) 회사는 원칙적으로 내부 징계 절차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규 및 관련 사내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을 제재합니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의 공정거래법규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며, 그 구체적인 운영은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